

#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이유서

의안번호

193

제출년월일 : 1993. 9. 10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□ 改正事由

- 동일 자치단체 내의 국·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분 산출 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
-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 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 대금납부로 간주하도록 하고

## □ 主要骨子

- 대부분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(조례 제26조)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(조례 제38조의 2)

##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4호 중 “영 제95조 제1항”을 영 제95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“다.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”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

다.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

라.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

마.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

바.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

사.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

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“30일이내”를 각각 “60일이내”로 한다.

제38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,000m<sup>2</sup>이하로서 1981. 4.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(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떨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)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(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)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. 다만 다수의 지방 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,000m<sup>2</sup>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영 제10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.  1-3 (생략)  4. 영 제95조 <u>제1항 제1호, 제2호, 제6조 내지</u> 제8호, 제11호, 제13호, 제14호,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5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초)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 준에 의한다.  1. (생략)  2. (생략)  가. (생략)  나. (생략)  (신설)  3. (생략)  가. (생략)  나. <u>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</u>  다. <u>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 라. <u>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 마. <u>지하실(2층 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)</u> <u>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 (신설)  (신설)	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영 제10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.  1-3 (현행과 같음)  4. ..... 제2항 ..... ..... ..... .....  제25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초)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 준에 의한다.  1. (현행과 같음)  2. (현행과 같음)  가. (현행과 같음)  나. (현행과 같음)  다. <u>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.</u>  3. (현행과 같음)  가. (현행과 같음)  나. <u>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 다. <u>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</u>  라. <u>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</u>  마. <u>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</u>  바.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. 지하 3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 의 1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대부료의 납기)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<u>30일</u> 내에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<u>30일</u> 이내</p>	<p>제26조(대부료의 납기) ① ..... ..... ..... ..... 60일 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..... ..... ..... <u>60일</u> ..... ..... ..... <u>60일</u> .....</p>
<p>제38조의 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(중략)</p> <p>1-2 (생 략) (신 설)</p>	<p>제39조의 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(중략)</p> <p>1-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m<sup>2</sup>이하로서 1981. 4.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(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)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(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)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.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m<sup>2</sup>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.</u></p>